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가 리버스 인텍스 승권 투자신탁(수식-파생영) 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
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
	는 바에 의한다.	는 바에 의한다.
	1. ~ 8. 생략	1. ~ 8. 좌동
		(신설) 9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 시행령 제2조
		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
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
	기구로 한다.	기구로 한다.
	1. ~ 6. 생략	1. ~ 6. 좌동
		(신설) <u>7. 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
	③생략	③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
	1. ~ 13. 생략	1. ~ 13. 좌동
		(신설) 14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
		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
		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지수 일 수
		익률의 역(-)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 인덱스 전략
		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
		상품입니다.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
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	(신설) <u>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()(해당)</u>
		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
		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 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
		<u> </u>
		합니다.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
	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	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, <u>고난도</u>
		금융투자상품
	나. ~ 다. 생략	나. ~ 다. 좌동

	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		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
		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지수 일 수익
		률의 역(-)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 인덱스 전략 등
		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
		품입니다.
	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	합니다.
;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	(1) ~ (2) 생략	(1) ~ (2) 생략
	(3) 생략	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	관한 법률,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
		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
		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		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
		요청할 수 있습니다.
		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
		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		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		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
		<u>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u>
		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
		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		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
		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		<u>강요할 수 없습니다.</u>
		(4) 좌동
	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중국본토 A주 레버리지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
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
	는 바에 의한다.	는 바에 의한다.
	1. ~ 9. 생략	1. ~ 9. 좌동
		(신설) 10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 시행령 제2
		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
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

	기구로 한다.	기구로 한다.
	기구도 한다. 1. ~ 6. 생략	기구도 한다. 1. ~ 6. 좌동
	1. ~ 0. ~ 0 =	1. ~ 0. 의공 (신설) 7. 고난도금융투자상품
	 ③생략	(연크) <u>7. 포근포급용구시 6명</u> ③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	
ETI서며니		·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
	1. ~ 16. 생략	1.~16. 좌동
		(신설) 17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
		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
		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아(KB)이 1 FHH H이크 연도하드로 오오디노 레버리
		양(陽)의 1.5배 내외로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 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
	레1님 ㅁ지 ㄸ느 매초에 귀쳐 나차	성이 큰 상품입니다.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	2. 업업무시기구의 중류 및 영대 가. ~ 마. 생략	2. 업업무시기구의 증류 및 영대 가. ~ 마. 생략
	71. 3 41. 64	
		(신설) <u>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</u> 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
		(1) 파 6 6 점 에에에 떠는 처럼 6기 기에 합립구시기 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
		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
		<u>기 국립에도 전급단을 할 이 기증하게 다 하다</u> 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	합니다.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
	식-파생간접형), 개방형, 추가형, 모자형, 종류형	식-파생간접형), 개방형, 추가형, 모자형, 종류형, 고난
		도금융투자상품
	나. ~ 다. 생략	 나. ~ 다. 좌동
	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		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
		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
		양(陽)의 1.5배 내외로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
		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
		성이 큰 상품입니다.
	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	합니다.
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	(1) ~ (2) 생략	(1) ~ (2) 생략
	(3) 생략	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	관한 법률,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

T	7
	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
	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	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
	요청할 수 있습니다.
	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
	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	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	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
	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
	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
	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	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
	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	강요할 수 없습니다.
	(4) 좌동
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스타 코리아 레버리지1.5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
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
	는 바에 의한다.	는 바에 의한다.
	1. ~ 7. 생략	1. ~ 7. 좌동
		(신설) 8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 시행령 제2조
		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
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
	기구로 한다.	기구로 한다.
	1. ~ 5. 생략	1. ~ 5. 좌동
		(신설) <u>6. 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
	③생략	③작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
	1. ~ 15. 생략	1. ~ 15. 좌동
		(신설) 16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
		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
		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
		양(陽)의 1.5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
		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
		<u>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u>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
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	(신설) <u>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</u>

T	T
	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
	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
	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
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
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	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고난도금융투자
	상품
나. ~ 다. 생략	나. ~ 다. 좌동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	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
	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
	양(陽의 1.5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
	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
	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<u>○ ○ · · · · ○ □ □ · · · ·</u> 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합니다.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'배우 • '네가 구막'에 스포인 게이 글쓰인 게이	제3구. 기다 구시시포오늘 뒤에 글쓰인 시청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시] 구. 기다 구시시도오늘 뒤에 글요한 시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가. ~ 마. 생략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(1) ~ (2) 생략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 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 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 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 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 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 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 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따라기회손실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 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확정적임을 표시해줄 것을 권유하거나강요할 수 없습니다.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 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 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
- KB스타 코리아 레버리지2.0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
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
	는 바에 의한다.	는 바에 의한다.
	1. ~ 7. 생략	1. ~ 7. 좌동
		(신설) 8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 시행령 제2조
		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
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
	기구로 한다.	기구로 한다.
	1. ~ 5. 생략	1. ~ 5. 좌동
		(신설) <u>6. 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
	③생략	③작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
	1. ~ 15. 생략	1. ~ 15. 좌동
		(신설) 16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
		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
		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
		양(陽)의 2.0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
		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
		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
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	(신설)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
		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
		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
		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
	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u></u>
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15 15 15 15 15 15 15 15
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
	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	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고난도금융투자
	1 100, 100, 110	상품
	나. ~ 다. 생략	 나. ~ 다. 좌동
	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		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
		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
		양(陽)의 2.0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

	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
	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합니다.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(1) ~ (2) 생략	(1) ~ (2) 생략
(3) 생략	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
	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
	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	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
	요청할 수 있습니다.
	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
	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	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	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
	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
	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
	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	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
	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	강요할 수 없습니다.
	<u></u> (4) 좌동
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1

- KB 고배당 커버드콜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
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
	는 바에 의한다.	는 바에 의한다.
	1. ~ 7. 생략	1. ~ 7. 좌동
		(신설) 8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 시행령 제2조
		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
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
	기구로 한다.	기구로 한다.
	1. ~ 5. 생략	1. ~ 5. 좌동
		(신설) 6. 고난도금융투자상품
	③생략	③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
	1. ~ 14. 생략	1. ~ 14. 좌동
		(신설) 15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
		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 지수 기초자산
		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 등 수익구조가
		투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
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		가. ~ 마. 생략
		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
		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
		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
		<u> </u>
		합니다.
	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서울구, 입업구시기 에 근된 사용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: 투자신탁, 증권(혼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혼
	합주식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	합주식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<u>고난도금융투</u>
		<u> 자상품</u>
	나. ~ 다. 생략	나. ~ 다. 좌동
	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		(문구추가) <u>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</u>
		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 지수 기초자
		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 등 수익구조
		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	합니다.
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	(1) ~ (2) 생략	(1) ~ (2) 생략
	(3) 생략	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	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
		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
		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		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
		요청할 수 있습니다.
		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
		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		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		<u> 기 국의시간의 시간 후 구시시크 경국 구간 의사기</u>

	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
	한 후에 청약 주문을 집행합니다.
	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
	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	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
	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	강요할 수 없습니다.
	(4) 좌동
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코리아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

구분	버스 Z배 테버리시 승권 투사진탁(수식-파생새간집영) 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
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
	는 바에 의한다.	는 바에 의한다.
	1. ~ 7. 생략	1. ~ 7. 좌동
		(신설) 8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 시행령 제2조
		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
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
	기구로 한다.	기구로 한다.
	1. ~ 5. 생략	1. ~ 5. 좌동
		(신설) <u>6. 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
	③생략	③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
	1. ~ 20. 생략	1. ~ 20. 좌동
		(신설) 21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
		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 음
		(陰)의 2배수 내외로 연동되어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
		되는 인버스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
		<u>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u>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
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	(신설) <u>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</u>
		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
		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
		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
	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	<u>합니다.</u>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재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재
간접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	간접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<u>고난도금융투자</u>
	<u>상품</u>
나. ~ 다. 생략	나. ~ 다. 좌동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	(문구추가) <u>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</u>
	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
	음(陰)의 2배수 내외로 연동되어 손익이 변동하도록
	운용되는 인버스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
	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합니다.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(1) ~ (2) 생략	(1) ~ (2) 생략
(3) 생략	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
	<u>거한</u>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
	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	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
	요청할 수 있습니다.
	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
	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	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	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
	한 후에 청약 주문을 집행합니다.
	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
	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	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
	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	<u>강요할 수 없습니다.</u>
	(4) 좌동
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	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
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	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
	는 바에 의한다.	는 바에 의한다.
	1. ~ 10. 생략	1. ~ 10. 좌동

		(신설) 11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 시행령 제2
		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
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	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
	기구로 한다.	기구로 한다.
	기구 한편. 1. ~ 7. 생략	1, ~ 7, 좌동
	1. 7. 0 7	
	© ₩₽ŧ	(신설) 8. 고난도금융투자상품
	③생략	③좌동 > H7
ETIMBLE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	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
	1. ~ 13. 생략	1. ~ 13. 좌동
		(신설) 14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
		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원자재선물에 주로 투자하
		는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
		큰 상품입니다.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
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	(신설) <u>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</u>
		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
		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
		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
	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	합니다.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특별자산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특별자산
	(상품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 전환	(상품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 전환
	형	형, 고난도금융투자상품
	나. ~ 다. 생략	나. ~ 다. 좌동
	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		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
		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
		<u>는</u>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원자재선물에 주로 투자
		하는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
		이 큰 상품입니다.
		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
		합니다.
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	가. ~ 마. 생략	가. ~ 마. 생략
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	(1) ~ (2) 생략	(1) ~ (2) 생략
	1	

	(3) 생략	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	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
		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
		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		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
		요청할 수 있습니다.
		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
		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		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
		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
		<u>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u>
		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
		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		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
		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
		<u>강요할 수 없습니다.</u>
		(4) 좌동
	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2. 변경일: 2021년 05월 08일(토)

3. 시행일: 2021년 05월 10일(월)